

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보증약관

제1조(보증책임)

- ① 건설공제조합(이하“조합”이라 한다)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(이하 “채무자”라 한다)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체결하고 조합이 제2조에 따라 개별확정한 건설기계대여계약(이하 “개별확정계약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이하 “보증사고”라 한다) 그 상대방(이하 “보증채권자”라 한다)에게 부담하는 채무(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)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② 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 공동계약인 경우 개별확정계약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보증사고)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2조(개별확정)

- ① 조합은 채무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정하여 게시(이하 “개별확정”이라 한다)하고, 개별확정한 내용을 보증채권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통보합니다.
 - 1. 보증채권자로 확정된 건설기계대여업자
 - 2.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의 한도(이하 “개별확정금액”이라 한다)
 - 3.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기간(이하 “개별확정기간”이라 한다)
 - 4. 그 밖에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의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조합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를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터넷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(지점방문 및 등기우편에 한함)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1항 제2호의 개별확정금액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4조의4 제4항 제2호 각목에 따라 산정합니다.
- ④ 제1항 제3호의 개별확정기간은 건설기계대여계약의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일에 90일을 가산한 날까지로 합니다.
- ⑤ 제1항의 게시 또는 통보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1. 조합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시
 - 2.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연락처로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통보(부득이한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우편 통보)
- ⑥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개별확정하지 않습니다.
 - 1. 채무자에게 당좌거래정지, 기업회생신청, 파산, 건설업등록말소,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조합이 인지한 경우
 - 2.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개별확정계약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이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
 - 3. 현장별보증의 보증잔액(이 보증서의 현장별보증의 보증금액에서 이미 개별확정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)이 개별확정할 건설기계대여계약서의 개별확정금액보다 적은 경우
 - 4. 개별확정기간의 종료일이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

제3조(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)

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2.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3. 보증서를 보증목적(주계약내용)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4. 개별확정계약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기계의 대여 계약이 아닐 때
5. 채무자에게 건설기계가 인도되기 전에 건설기계대여계약이 해지된 때
6. 조합이 보증사고발생으로 이 보증의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때
7.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

제4조(보증채무의 이행한도)

① 조합이 각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개별확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건설기계대여계약의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각 보증채권자의 실제 기계대여로 발생한 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.

② 제1항의 인정되는 금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.

1. 보증채권자가 “건설산업기본법” 및 기타법령에 따라 원도급의 발주자 또는 채무자의 상위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의 금액
2.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
3.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권자의 계속 대여로 생긴 건설기계대여대금의 금액
4. 채무자 등의 인정여부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실제 시공에 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
5. 대금 지급기일(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)이 보증기간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

③ 조합은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제2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개별확정되지 않은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현장별보증의 보증금액에서 개별확정된 모든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보증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되 조합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(손해의 방지 및 경감 의무)

-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,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의성실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.
-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개별확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제6조(보증서의 효력상실)

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 다만,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

1. 개별확정된 이후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
2. 개별확정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

제7조 (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)

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
1. 개별확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또는 대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

에는 그 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

2.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
 3. 선금 또는 대금 수령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으로부터 통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여부, 작업내역 및 대금수령내용(어음인 경우 어음사본 첨부)의 사실
 4. 조합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때
- ②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1. 보증사고의 사유 및 원도급의 발주자(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,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) 또는 채무자가 확인한 작업일보 및 작업확인서 등 보증금 청구금액에 관한 정당한 입증서류
 2. 그 밖에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
-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와 제2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제8조 (보증사고 발생시 대역대금 인정기준)

제4조 제1항의 각 보증채권자의 실제 기계대여로 발생한 대금의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조합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
1. 원도급의 발주자(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,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) 또는 채무자가 확인한 작업일보 및 작업확인서, 공사내역서 등의 자료
2. 개별확정계약의 계약문서 등

제9조(보증채무의 확인조사)

- ① 조합은 제7조제1항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등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작업일보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제10조(보증금 지급시기)

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,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11조(대위 및 구상)

-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,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.
-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조합은 보증금 지급전이라도 위의 서류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협조 또는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조합이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(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)

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.

제13조(관할법원 및 준거법)

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,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